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본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23일(목) 총 2매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 토지관리팀장 • 담당자	서정하 ☎440-4561 장미경 ☎440-45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건 -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오는 5월 31일 종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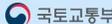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제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p><b>신고 시행일</b> 2021년 6월 1일(화)</p> <p><b>신고 의무인</b>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취임신고 가능)</p> <p><b>신고 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li> <li>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li> <li>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li> </ul>	<p><b>신고 서류</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해당일자 부여 시 필요)</p> <p><b>신고 방법</b>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a href="http://rtms.molit.go.kr">http://rtms.molit.go.kr</a>)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p> <p><b>신고시 혜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행력 발생</li> <li>②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600원)</li> </ul>
---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